

면제확인서

신청인	회사명	
	대표자	전자우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업자	제조국명	
	회사명	
면제확인 대상제품	제품명	모델명
	제품정격	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
	수량	
	사용장소	
면제내용	안전인증[], 안전확인신고[],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[]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, 같은 법 제1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,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

직인

비 고

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면제됩니다.